

학교법인 청심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유치원, 중등 및 전문신학대학원의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청심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鮮鶴天宙平和大學院大學校) (2016.09.01.개정)
2. 청심국제고등학교(淸心國際高等學校)
3. 청심국제중학교(淸心國際中學校)
4. 청심유치원(淸心幼稚園)

제4조(주소)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이 사무소를 둔다.

- ① 본사무소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1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13조(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종류 및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 (2016.10.31.)

2. 감사 2명

② 제1항의 이사 중 2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③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제1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로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그 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삭제

제20조의4(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두되, 별도로 조직으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2. 청심국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하는 자 2명
3. 청심국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하는 자 2명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명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및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 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겸직금지) ①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2016.09.01.개정)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조교임면 사항은 제외한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 운영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토지, 건물의 임대 포함)

2. 금융업 및 주식투자

3. 수산업

4. 축산업 및 임산업
5. 유류업 및 기타 서비스
6. 도매, 제조, 서비스 회사에 출자
7. 출판업
8.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9. 캠프사업
10. 상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제32조의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를 둘 수 있다.

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1
2. 출판업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1
3. 부동산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88 (신사동)
4. 부동산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4 (역삼동)
5. 부동산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번지 (10층 제1호, 제2호, 제3호)
6. 부동산업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조마루로 85번길 18 (4층, 5층)
7. 캠프사업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1 본관301호

제34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경영자에게 귀속된다.

제37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8조(임면 및 학교의 장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대학교 총장은 4년, 유치원장은 2년으로 하

고 증임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증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09.01.개정)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 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③ 대학의 교무 위원 등 교원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교원 중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과 사망에 의한 면직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이때 공개전형 지원응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⑦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6.10.31. 개정)

제39조(기간제교원) ①임면권자는 고등학교 이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으로 한다.

1. 교원이 제40조의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4. 교원 퇴직시 신규 채용할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5.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

지 못하게 된 때

②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3조 내지 제65조,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매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6.09.01.개정)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대학 소속 교원이 이 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장애 임용되었을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제1항 중 제7호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1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전액을,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1호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4조의2(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대학교의 경우에는 65세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2세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2016.09.01.개정)

② 교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명예퇴직수당) 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38조 제2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 대한 능력과 실적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제1항 이외의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1.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교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 중 7인의 교원(학교장 제외)을 학교장이 임명한다.

2.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5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6조(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8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주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사유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한 경우
3.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2016.09.01.개정)

제68조(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7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1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함)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2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일반직원의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016.09.01.개정)

②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2016.09.01.개정)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7조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일반직 3급으로 보한다. (2016.09.01.개정)

② 법인사무국에는 인사, 총무, 재무, 수익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두고, 명칭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으로 정하며 부서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2016.09.01.개정)

③ 삭제 (2016.09.01.개정)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16.09.01.개정)

제77조의2 (부속시설) ① 법인에는 교육 연구소 등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단, 교육 연구소의 명칭은 청심국제교육연구소로 한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단, 교육 연구소의 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 보할 수 있다. (2016.09.01.개정)

③ 각 부속시설의 장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각 부속시설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학원대학교

제78조(총장 등) ① 대학원대학(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 (2016.10.31 개정)

④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특수임무 부총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총장은 3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문경력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16.10.31 개정)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유고시에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016.10.31 개정)

제78조의 1(특임부총장) ① 특임부총장은 전문성, 효율성이 요구되어 총장이 따로 정한 특정직무에 한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2016.10.31. 신설)

② 특임부총장은 특정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업적을 쌓은 전문가이어야 하며, 세부자격은 특정 직무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6.10.31. 신설)

제79조(학과장) ① 대학교에 각 학과별로 과장을 둔다.

② 학과장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2006.3.13 개정)

③ 각 학과장은 당해 각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0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사무처를 두며 직속기관으로 교목실과 대학발전추진위를 두고, 산하에 과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학운영 방침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부조직의 신설, 통합, 폐지를 할 수 있다.

② 각 실·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4급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2006.3.13 개정), (2016.09.01.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부속시설 등)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2016.09.01.개정)

③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도서관)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을 둔다.

②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도서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2016.09.01.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고 등 학 교

제8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 (2016.09.01.개정)

②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016.09.01.개정)

③ 제1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16.09.01.개정)

제 4 절 중 학 교

제85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하부조직) ① 중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으로 보한다. (2016.09.01.개정)

②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016.09.01.개정)

③ 제1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16.09.01.개정)

제 5 절 유 치 원

제87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생을 지도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생을 지도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하부조직) 유치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 7급으로 보하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16.09.01.개정)

제 6 절 정 원

제89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0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한다. (2016.09.01. 개정)

제91조(위원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 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92조(위원선출 및 위촉)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선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16.09.01. 개정)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정교사로 한다. (2016.09.01. 개정)

③ 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97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학교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98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97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1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 등)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102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3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를 포함한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 평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4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5조(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06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7조(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8조(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10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11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하영호	51.11. 4	4	경기 가평 설악면 선촌리456
이 사	예종덕	28. 3.28	4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이 사	노응귀	44. 4.21	2	경기 가평 설악면 선촌리456
이 사	최재순	53.11.25	2	경기 가평 설악면 신천리506-1
이 사	차상철	61. 8.14	2	경기 가평 설악면 신천리506-1
이 사	박암중	56.12.31	4	경기 용인 수지읍 풍덕천리699
이 사	우중춘	53. 8.28	4	강원 춘천 후평3동 금호빌리지6-404
감 사	이정복	61. 1.14	2	경기 가평 설악면 창의리 산24-6
감 사	전영호	53. 8.13	2	인천 계양 작전동 859-14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유치원 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원장은 제3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평의원 구성단위 정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10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6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6년 10 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8조 제1항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법인 및 각급학교 사무직 정원

구 분	법 인	선학유피 대학원대학교	청심 국제고등학교	청심 국제중학교	청심 유치원
총 계	5명	22명	11명	11명	7명
일반직(계)	5명	17명	11명	11명	7명
2급	-	1	-	-	-
3급	1	1	-	-	-
4급	-	5	-	-	-
5급	2	2	1	-	-
6급	1	2	1	1	-
7급	1	3	4	4	2
8급	-	2	3	4	2
9급	-	1	2	2	3
기술직(계)	0명	5명	0명	0명	0명
5급	-	1	-	-	-
7급	-	2	-	-	-
9급	-	2	-	-	-